
2023년도 하반기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 안내

2023. 4.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목 차

I. 재승인 개요	1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1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1
3. 재승인 여부 결정	2
4. 추진일정	2
5. 유의사항	3
II. 재승인 심사	4
1. 심사 기본 방향	4
2. 심사절차	5
3. 심사위원회 구성	6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6
III.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제출요령	7
1. 제출서류 및 제출 부수	7
2. 작성 및 제출 요령	9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10
IV. 재승인 신청서	11

I. 재승인 개요

1 재승인 대상 사업자

-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승인 유효기간이 '23년 하반기에 만료되어 동법 제17조에 따라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방송사업자

2 재승인 신청서류 제출

- 제출기한 : 승인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 '23.11.30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자 : '23.5.30(화)까지 제출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등),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등
- 제출처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자 앞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택배, 퀵서비스 접수 불가)
- 문의 : 방송지원정책과 재승인 담당
- (중편PP) 02-2110-1431, haenakim35@korea.kr / 02-2110-1435, cmj594@korea.kr

※ 추후 담당자 변경 시 재안내 예정

3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의결
 - 총점 700점 이상 사업자의 경우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사업자는 4년, 650점 미만 사업자는 3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중점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음
- *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사항
-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심사사항 중, 감점항목 (관계법령 위반 정도 및 시정명령 건수 등)은 해당 심사사항의 과락평가에서 제외

4 추진 일정

- '23. 5. 30 재승인 신청서 접수 마감('23.11.30 승인 유효기간 만료 사업자)
- '23. 6~10월 신청서 검토 및 보정, 시청자 의견접수 등
 - ※ 재승인 대상 방송사업자는 시청자 의견 수렴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자세한 사항은 추후 통보)
- '23. 10~11월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3. 11월 재승인 여부 의결 및 심사결과 통보
 - ※ 상기 일정은 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유의사항**

- 재승인과 관련된 각종 신청(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국민과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실에 기초하여 성실히 작성하여야 함
-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중요사항을 누락하는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과 그 책임은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됨
- 위원회가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백서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될 수 있음
- 본 안내서에 기재된 심사 일정, 심사 계획은 심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Ⅱ. 재승인 심사

1 심사 기본 방향

- 재승인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제·경영·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추진
- 방송법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기반으로 재승인 신청 사업자의 사업 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하되,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심사사항2)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심사사항3),
 -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
- 사업계획서 전체 분량을 제한(500페이지 내외)함으로써, 사업계획서 작성의 완성도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 ※ 사업계획서 본문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및 세부 제출자료 등은 별도 부속 서류를 활용하여 심사에 반영
- 재승인 심사 시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방송과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자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국민의 질의사항을 방송사 대표 등에게 직접 질의하고, 응답한 내용을 심사에 반영
- 방송사업 실적 및 사업계획에 대한 실질심사 강화를 위해 현장방문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 제출 자료에 대한 사전검증 실시

2

심사절차

- 신청서류 접수 및 보정
 - 제출서류 구비 여부 확인 및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
 - 제출서류 세부 검토 후 미제출서류 징구 및 보정사항 통보
- 시청자 의견 청취
 - 우편, 팩스, 전자우편, 방통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
 - ※ 재승인 대상 방송사는 시청자 의견 관련 사항을 자사 방송을 통해 공지
- 현장실사 :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장실사 실시
- 의견청취 : 사업자가 제출한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중 심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
 - 참석대상 : 법인 대표자, 편성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자 등
 - ※ 법인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복수 대표자 모두 참석
 - 청취일시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기간 내
 - 평가방법 : 의견청취에 대한 별도 배점 없이 관련 심사평가에 반영
- 심사평가 : 심사위원장을 제외한 심사위원 전원이 신청법인의 제출 서류 및 의견청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항목별로 심사
- 방송통신위원회 심의·의결 :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승인 여부 결정
- 심사결과 통보 및 공표
 - 사업자에게 공문을 통해 재승인 여부 및 조건 등 심사결과 통보
 -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등 심사결과를 향후 백서 등을 통해 공표

3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구성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13인

< 심사위원회 구성 >

구 분	분 야(인원)	비 고
심사 위원회 (13인)	심사위원장(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방송·미디어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법률분야(2)	변호사 또는 법학 교수
	경제·경영·회계분야(3)	관련학과 교수, 회계사, 관련분야 종사자
	기술분야(1)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시청자·소비자분야(3)	관련학과 교수 또는 관련분야 종사자

※ 심사위원장은 심사평가에 참여하지 않음

4 심사사항(항목) 및 배점

○ 「방송법」 제10조(심사기준·절차) 제1항 및 제17조(재허가 등) 제3항에 따른 법정 심사사항을 고려하여 구성

< 심사사항 및 배점 >

심사사항	총점PP
1. 방송평가위원회의 방송평가*	400
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210
3.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190
4.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00
5.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00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재난방송 실시에 관한 사항	50
합 계	1,050***

* 종전 재승인에 반영된 방송평가 이후 평가자료 반영

**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22.9.21)'은 필요 시 세부계획에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전체 배점의 10%(100점) 범위 내에서 정의하도록 명시

*** 총점 1,050점을 1,0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재승인 여부 결정

Ⅲ. 재승인 신청서류 및 작성 · 제출 요령

1 제출서류 및 제출부수

□ 제출서류

- 신청공문, 재승인 신청서, 부속서류, 별도제출자료, 요약문 등으로 구성

<재승인 신청 서류 현황>

1. 신청공문
2.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 ① 재승인 신청서
 - ② 서약서
 - ③ 신청법인 명세
 - ④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 ⑤ 승인장 사본
 - ⑥ 주간기본편성표
3. 부속서류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5.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 5.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원본 보정 후 제출

□ 제출부수

구분	서류	원본	사본	USB	비고
최초 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2	1	-
	3. 부속서류	1	1	1	-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2	-	-	파일 제출 (재무제표 등)
보정 후 재접수시	1. 신청공문	1	-	-	-
	2.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1	18	1	
	3. 부속서류	1	18	1	
	4. 별도제출자료(감사보고서 등)	-	-	-	필요시 재제출
추후 통보시	5.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	1	18	1	

※ 보정 후 접수일은 추후 조정하여 통지

○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기타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세부 제출 자료

○ 별도제출자료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내역 엑셀파일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 대표자와 편성책임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승인장은 스캔하여 그림파일(JPEG)로 변환, 수록

2

작성 및 제출 요령

-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전체적인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
- 신청서류는 신청법인이 직접 작성
- 제출서류는 한글문서(hwp)로 작성하고, 기본글꼴 및 크기는 “휴먼 명조, 13”, 표는 “중고딕, 12”로 작성, A4용지(210×297mm)를 사용하며, 쪽수를 일련번호로 작성하여 표기
 - ※ 재무제표는 한글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고,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파일로 제출
- 지도·도면 등 불가피하게 A4 규격보다 큰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어서 제출
- 제출하는 원본 및 사본은 표지에 각각 “원본”, “사본”임을 표시하고, 표지 안쪽 면에는 원본은 “원본임이 틀림없음”, 사본은 “원본과 동일함”을 기재하고, 각각 신청법인명, 대표자명을 기재한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 사본의 경우 겉표지 오른쪽 상단에 표시를 하고 아래쪽에는 전체 사본 부수(18), 위쪽에는 사본의 번호를 기재
 - 부속서류의 표지에 해당 사업계획서의 목차를 표기하고 각각의 페이지에 쪽수를 표기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는 500쪽 내외로 작성
-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요약문’은 별도로 30쪽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요약문의 근거가 되는 본문 및 부속서류의 해당항목을 적시
 - ※ 요약문은 원본보정 후 별도 제출
- 첨부한 재승인신청서 양식은 표준양식이며, 각 사업자별 특성에 맞게 편집·수정하여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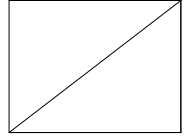
- 각 항목별로 기간을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 (MBN) 실적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계획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 최종적인 실적 작성기간은 심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추후 통보 예정
- 주요 실적이 3페이지 이상인 경우, 3페이지까지 본문에 작성하고 전체 내용은 부속서류로 제출
- 신청서 접수 이후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제출서류 외에 보충자료 등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함

3

방송통신위원회 담당자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 담당자 현황 (23.5월초 기준)
 - (총편PP) 김해나 사무관(02-2110-1431), 최문정 주무관(02-2110-1435)
 - ※ 재승인 신청서 작성 관련 사항은 상기 담당자에 문의

재승인신청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신청서

원 본

2023. 00.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I. 재승인 신청서	0
II. 서약서	0
III. 신청법인 명세	0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0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1-1. 공적책임·공정성 실적 및 계획	0
1-2.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	0
1-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0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2-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	0
2-2.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0
2-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0
2-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	0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3-1.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	0
3-1-1.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0
3-1-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0
3-1-3.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0
3-1-4.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0
3-1-5. 자금조달 및 운영	0
3-1-6. 사업성 분석	0
3-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	0
3-2-1. 재무구조	0

3-2-2. 수입현황	0
3-3-3. 추정수입	0
3-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	0
3-3-1. 방송시설 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0
3-3-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0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4-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0	
4-1-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0
4-1-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0
4-1-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0
4-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0
4-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	0
4-4.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 권고 이행여부 등	0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5-1. 재난방송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0
5-2.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0
5-3. 특수관계자 확인서(주요주주)	0
5-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	0
5-5. 협찬 운영 현황	0
5-6. 방송사업 관련 각종 소송 및 분쟁 현황	0
5-7. 관계회사 현황	0
5-8. 특수관계자 방송사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0
5-9. 각종 수상 실적	0
V. 승인장 사본	0
VI. 주간기본편성표	0
VII. 부속서류 목차	0

I. 재승인 신청서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곳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최다액출자자		생년월일
승인 내용	승인번호		승인일자
	소재지 (주된 사무소)	주소 : 전화 :	공급분야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위반사항	위반횟수	시정조치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사업수지건적	역무제공내용	수신자 불만처리

「방송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재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제출서류	1.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서 1부. 2. 시설배치도(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3. 방송채널사용사업시설현황(시설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4. 향후 5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100,000원
------	--	-----------------

210mm×297mm[백상지(80g/㎡)]

□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신청서

※ 재승인 신청서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8호, 2022.7.4. 일부개정)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1. 신청인

※ 복수 대표자인 경우, 모든 대표자와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기재
※ 소재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2. 법 또는 승인조건 위반 및 시정에 관한 사항

※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3. 방송사업 운영실적에 관한 사항

※ 각각의 항목에 “별첨”으로 기재한 후 사업계획 해당부문에 관련 내용을 기재

Ⅱ. 서약서

서 약 서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를 사실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 법률적·재정적·행정적 책임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하여 재확인하고 서약하며, 서약사항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질 경우 승인 취소 등의 처분을 감수할 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서약합니다.

1. 본 법인은 「방송법」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으며, 소유 제한 규정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2.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참여하는 구성주주가 일체 없습니다.
3. 본 신청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면계약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계약한 사항이 없습니다.
4.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5. 본 법인은 재승인 신청서류에 기술한 사업계획 등이 국민과 방송통신 위원회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6. 본 법인은 재승인을 받을 경우, 재승인 유효기간 동안 방송법을 준수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00월 00일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Ⅲ. 신청법인 명세

1 개요

※ 방송사의 설립목적, 운영방향, 방송현황 등을 기술

2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

※ 방송사업의 기본이념 및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3 연혁

※ 최초 승인장 교부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기술

4

법인 현황

구분		세부 내역			
방송법인 명칭		국문			(약칭)
		영문			(약칭)
소재지					
홈페이지 주소					
법인설립일자		자본금(단위:억원)			
구분	회사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요약력	임기
법인대표자					... ~ ...
편성책임자					-
임원					... ~ ...
					... ~ ...
					... ~ ...
					... ~ ...
					... ~ ...
5%이상 주요주주 현황		주주명	대표이사	참여지분(%)	회사자본금

5

주주 관련 사항

1. 주주 현황

① 구성 주주의 법인명 (성명)	대표 자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② 구성 주주간 특수 관계자 명	출자비중		구성주주의 최대주주				③ 외국인 지분		④ 대기업 해당 여부 (0,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0, ×)
				주 식 수	지 분 율	법인명 (성명)	대 표 자	국 적	사업자 등록 번호 (주민 등록 번호)	해당 여부 (0, ×)	총합 비율 (%)		
총계													

※ 2023년 4월 30일 기준으로 모든 구성주주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세부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음

- ①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 법인은 법인명을, 개인은 성명을 기재하며, 개인 주주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앞 6자리만 기재
- ② 구성주주 간 특수관계자 명 :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당해 방송사업자의 구성주주 간 관계를 표시하되, 특수관계자가 복수로 있을 경우에는 복수의 특수관계자 명을 기재
 - 각 방송사업자는 5%이상 주주에게 <6.. 기타 제출사항>의 ‘특수관계자 확인서(인감도장 날인 必)’를 작성토록 하여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받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5%이상 주주사가 특수관계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에 ‘특수관계자 확인서’의 첨부1(주주현황)을 제공해야 함.
 - ※ 5% 미만 주주의 경우, 특수관계자 확인서 제출의무는 없으나, 기재사실의 진위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여 정확한 사실을 기재
- ③ 외국인 지분
 - 외국인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총합비율(%) : 구성주주의 「방송법」 제14조에 따른 외국인 지분 비율(%)을 기재
- ④ 대기업 해당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 ⑤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 여부 : 구성주주가 「방송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인 경우, 해당 란에 "o"을 표기

2. 주주 변동내역(‘20.1.1.~’23.4.30.)

(단위 : 백만원)

변경일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비고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주주명	출자금액	지분율		

※ 엑셀 파일로도 별도 제출

3. 주주 및 자본금 변동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향후 재승인 기간 변동 계획
주 주	
자본금	

※ 해당 사업자만 기재하며, 기업공개 계획 등을 포함

IV.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1.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1

공적책임 · 공정성 실적 및 계획

가. 재송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수행실적 및 방송 서비스의 보편성 구현 수행실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격제고 차원에서 방송 심의제재 건수 감축을 위한 사업자의 노력과 관련 사항을 포함시킬 것
 - 출연자 섭외 시 전문성 등 자질 검증장치, 관련규정 등
 - 부적절한 발언으로 방송심의제재의 원인이 된 출연자에 대한 조치사항

프로그램명 (분야)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자체 조치사항 (조치일자)
000 (보도)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 관한규정 제 0조제0항	방송언어 객관성	외부출연자 3명 출연정지 1개월 (20XX.1.1.)
	권고, 의견제시			정치적중립	진행자 1명 경고 및 프로그램 폐지 (20XX.12.10.)

※ 자체 조치사항 : 진행자, 제작진, 내부 출연자, 외부출연자 등 조치(법정제재 및 행정 지도 포함)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관련 이행실적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이행실적
- 방송언어 순화 실적
- 편성규약(제정일자, 주요내용, 공표방법·공표현황, 주요 이행사항 등)
-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실적 등
-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실현 관련 이행실적 등
 - ※ 제도적 장치 위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구현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방송프로그램의 품질제고를 위한 향후계획(심의제재 건수 감축 등)
-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
-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계획
- 편성규약 제정 및 공포 계획 등
- 공익적 캠페인, 행사 등의 계획 등

2

시청자 권익 보호 실적 및 계획

1. 시청자 참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이행실적
- 시청자위원회 및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운영계획 관련 이행실적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양식)

○ 운영 현황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시청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건수					
제시의견 활용실적 건수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 요구) 반영 내역

순번	제안내용	시청자위원회 제시의견 반영 내역	제안시기	비고

○ 시청자위원 제시 의견(시정요구) 중 미반영 내역

순번	시청자위원회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사항 내역	미반영 사유	비고

○ 시청자 위원 명단(연도별 작성)

직책	성명	생년월일	주요이력	추천부문	추천단체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단위 : 분, %)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시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평가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방송기간	프로그램 명	방송시간(분)	비고
'20. 12.1 ~ '20. 12.30	시청자 세상	60	
'21. 9.31 ~ '21. 10.7	시청자 평가	60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참여 관련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시청자 불만처리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 '연도별 자체심의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이행실적
- 자체심의 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이행실적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시청자 불만처리 실적(양식)

(단위 : 건)

구분	불만접수건수	불만처리건수	미처리건수	불만처리비율(%)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불만 상세 내역(양식)

(단위 : 건)

대분류	중분류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도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진행자 불만										
	출연자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막 불만										
	편성불만										
	소 계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청										
	소 계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저작권에 관한 건										
	명예훼손에 관한 건										
	소 계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기술관련 불만										
	소 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기준(44쪽)에 따라 작성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시청자 불만 미처리건수 상세 내역(양식)

(단위 : 건)

대분류	중분류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1분기		합계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진행자 불만										
	출연자 불만										
	자료화면 불만										
	자막 불만										
	편성불만										
	소 계										
프로그램 관련 시정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정정보도 요청										
	소 계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저작권에 관한 건										
	명예훼손에 관한 건										
	소 계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기술관련 불만										
	소 계										
기타											
합계			100%		100%		100%		100%		100%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기준(44쪽)에 따라 작성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연도별 자체심의 현황(양식)

<20xx년>

전체방송 프로그램 편수	심의현황			심의 미필 건수	심의시기			심의결과	
	대본심의 건수 (비율)	제작물 심의건수 (비율)	전체심의 건수		사전심 의 건수 (비율)	당일심 의 건수 (비율)	사후심 의건수 (비율)	지적 건수	이행 건수

※ 자체 심의규정과 연도별 자체심의 세부 실적(심의실적, 지적사항 및 시정내용 등)은
부속서류로 제출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시청자 불만처리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참고 - 시청자불만처리 유형 분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프로그램 불만	내용 불만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불만 등
	진행자 불만	진행자의 언행에 대한 불만 등
	출연자 불만	출연자에 대한 출연 불만 또는 출연자 발언 등에 대한 불만 등
	자료화면 불만	자료화면의 선정성 폭력성 및 다른 자료화면 사용에 대한 불만 등
	자막 불만	자막 오기 자막 표현에 대한 불만 등
	편성불만	프로그램 편성 관련 불만 등
프로그램 관련 시정 요구	영상 및 기사 삭제 요청	영상 및 기사 불만 등
	정정보도 요청	리포트나 제작 프로그램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민원인의 정정 및 삭제 요청 사항 등
시청자 권익보호	피해보상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피해보상 사항 등
	저작권에 관한 건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등
	명예훼손에 관한 건	보도 또는 프로그램 방영에 따른 명예훼손 사항 등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 등 이용 불만	다시보기 불만, 이용 장애, 프로그램 소개 업데이트, 시청자 게시판 등
	기술관련 불만	방송 기술 및 난시청(종합편성 제외) 등
기타	기타	화질불만 등

3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등에 대한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이행실적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기여실적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실적(양식)

연도	일자 ¹⁾	지역 ²⁾	유형 ³⁾	주관 또는 주최 단체	참여 내용	금액(백만원) ⁴⁾	비고
2020.12월							
소계							
2021년							
소계							
2022년							
소계							
2023년							
소계							
합계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①지역적 ②사회적 ③문화적 기여실적은 양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

- 1) 동일 사업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00.00.00 외 0건(매주, 매월, 매분기, 매년 등)
- 2) 시·도(서울특별시는 제외) 단위로 구분하여 기재
- 3) 기부, 후원, 협찬,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
- 4) 관련 입증서류를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지역사회 발전 관련 프로그램 제작 실적(양식)

< 개요 >

(단위 : 분, %)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제작 실적		%		%		%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세부내역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세부내역>의 방송시간 합과 <개요>의 방송시간은 동일해야 함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청법인의 사회적 기여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문화보존 및 발전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발전 관련 계획

2.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방송시간, 편성비율, 방송실적 등은 월간방송실시결과 작성기준과 동일하게 작성

1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제작·구매 등 수급 실적 및 계획

1. 기획·편성의 우수성 및 독창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편성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실적의 당초 기본방향 및 목표와의 부합 여부
- 방송분야별, 장르별 편성 관련 이행실적

방송프로그램 편성 실적(양식)

분야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이행실적 >

재승인 신청시 제출한 프로그램 주요 제작계획 (프로그램명)	이행실적		비고
	프로그램명	방송일시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향후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방송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분야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간 ¹⁾	비율 ²⁾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시간	비율 (재방)
보도												
교양												
오락												
총계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100% (재방송)

- 1) 분야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재방송 비율의 합은 연간 총 방송시간 중 재방송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도록 작성

□ 주요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

편성일자	프로그램명	방송시간	기획의도 및 개요	비고

2. 편성의 자율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수급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수급 실적(양식)

<20XX년>

구분		재승인 시 사업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비용 ²⁾	시간	비율	비용
자체	순수자체제작 ³⁾						
	공동제작 ⁴⁾						
	소계						
외주제작 ⁵⁾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계						
총계			100%			100%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시간 및 비용 합은 연간 시간 및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비용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임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2022~2023년도 비용 실적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21.10월 개정)(60쪽)'에 따라 작성하고, 2020-2021년도 비용 실적은 이전 기준으로 작성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구분		2023년			
		계획		실적	
		시간 ¹⁾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1) 제작원별 방송시간의 합은 연간 방송시간(총계)이 되도록 작성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프로그램 수급(자체제작, 외주제작, 구매) 관련 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관련 양식은 아래 참조

<2023년 ~ 2028년까지 연도별 제작 계획>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25년			2026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 비용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21.10월 개정)(60쪽)'에 따라 작성

구분		2027년			2028년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시간(분)	비율	비용 (백만원)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100%			100%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자체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외주 제작	보도												
	교양												
	오락												
	소계												
구매	보도												
	교양												
	오락												
	소계												
총계													

2

방송프로그램의 투자 실적과 계획의 우수성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투자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 방송프로그램 투자 관련 실적

연도별 방송 프로그램 투자 실적(양식)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계획	실적 ²⁾	계획	실적 ²⁾	계획	실적 ²⁾	계획	실적 ²⁾
자체	순수자체제작 ³⁾								
	공동제작 ⁴⁾								
	소계								
외주제작 ⁵⁾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국내물 구매 ⁶⁾								
	국외물 구매 ⁷⁾								
	소계								
총계									

- 1) 제작원별 프로그램 비용 합은 연간 비용(총계)이 되도록 작성
- 2) 실적은 제작비(전속료, 출연료, 취재비, 진행비 등 직접제작비만 해당되며,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및 간접제작비는 제외), 외주제작사 지급비용, 구매비용 등의 비용을 작성
- 3) 순수자체제작 : 방송사 단독으로 기획, 제작, 편성하여 저작권 가지는 경우
- 4) 공동제작 : 방송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으로 기획, 투자, 제작하는 경우(공동기획, 공동투자, 공동제작의 3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 5) 외주제작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하는 경우(방송법 제72조제1항). 단, 공동제작의 3요건 중 당해 방송사업자가 한가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외주제작에 포함하며, 구매로 분류되는 경우
- 6) 국내물 구매 :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자를 위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경우
- 7) 국외물 구매 : 외국의 사업자가 제작한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외국에서 직접 또는 국내 유통사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2022~2023년도 실적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21.10월 개정)(60쪽)'에 따라 작성하고, 2020-2021년도 실적은 이전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 프로그램 투자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방송프로그램 투자 기본방향
- 방송프로그램 투자 관련 계획

<2023년 ~2028년까지 연도별 투자 계획>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체	순수자체제작						
	공동제작						
	소계						
외주제작	특수관계자 외주제작						
	구매						
구매	국내물 구매						
	국외물 구매						
	소계						
총계							

* 비용은 변경된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기준(’21.10월 개정)(60쪽)’에 따라 작성

※ 2023년도 계획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 기준으로 작성

< 참고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21.10월 개정) >

※ 22년도 이후 프로그램 수급, 투자 비용 산정 시 참고하여 작성

□ 개 요

- 방송사업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자체, 외주)하거나, 구매한 비용 (“콘텐츠 투자금액”이라 함)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 자체 :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사업자가 직접 제작하는 것
 - 외주 : 자사의 방송프로그램을 외부의 제작자가 제작하여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것
 - 구매 :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제작완료 된 방송프로그램을 방송 목적으로 사오는 것
- ※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 대상)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포함한 영업비용과 기타 영업외비용 항목 중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구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
- 재승인 사업계획서 중 ‘방송프로그램 투자 실적 및 계획’ 작성 시 본 세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요망
- 콘텐츠 투자금액(계정과목별 금액이 아니라 총액 기준) 산정 시 이하 계정과목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필요 시 방통위가 인정여부 판단

□ 자체제작 계정과목 및 세부내용

-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아직 완전한 자산형태를 갖추지 못하므로, 제작이 완료될 때 까지는 선급금으로 산정
 - 다만, 일반적인 선급금과 구별하기 위해서 ‘방송프로그램 선급금’으로 분류
 - * 사업자의 회계연도 내에서 제작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그램
- 방송사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급여, 상여금, 제수당 및 퇴직급여 등)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
 - ※ 복리후생비(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 법정부담금(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포함

○ 방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 상각비**도 콘텐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되, 본 세부기준 적용 이후 신규투자한 자산의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부터 인정

* 감가상각비 : 시간의 경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방송장비 등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

** 무형자산(방송프로그램 외 무형자산) 상각비 : 시간의 경과로 그 물리적·경제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정확한 기간손익을 산출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과 관련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중 당기에 가치가 감소되어 비용화 된 부분

① 원고료 : 제작업무 중 작가, 통·번역 관련비용(사전기획료 포함)

예시) 문예비, 작가료, 사전기획료, 교열담당보수료, 원고료, 구성대본료, 외화번역료, 번역료 등

② 출연료 : 제작업무 중 출연자와 관련한 비용(전속금 포함)

예시) 출연료, MC료, 아나운서/기상캐스터 출연료, 특별출연료(직원), 가족 및 단체출연료, 음성배역, 사회자료, 성우출연료 등

③ 연출료 : 제작업무 중 연출(조연출, FD 등 포함) 관련 비용(사전기획료 포함)

예시) 연출료, 보도제작부스텝료 등

④ 기자인건비 : 제작업무 중 취재·촬영 기자와 관련한 비용

※ 인건비 이외 비용은 업무별 계정과목으로 할당

⑤ 영상촬영/편집비 : 제작업무 중 영상촬영* 또는 편집 관련 비용(영상촬영장비 수선유지비, 보험료 등 포함)

* 촬영 기자, 영상촬영장비 차량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카메라임차료, 촬영료, 헬리캠, 편집료, 중계지미짚 임차, 6mm 외 기타 장비, 동시녹음, 외부카메라 등

⑥ **음악/음향효과비** : 제작업무 중 음악·음향효과와 관련한 비용
(CD, tape 등 저장매체, 음반CD 구입비, 효과료 등)

※ 음악저작권료는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음악료, 소모품비, 음악작곡용역비, 음악/음향 등

⑦ **미술효과/세트/조명비** : 제작업무 중 미술(CG)효과, 세트, 조명관련
비용(자막 포함)

예시) 삽화료, CG료, 미술비, 미술효과료, 세트비/세트장치(설치 해체료 포함),
구조물, 소도구, 전식, 철구조물 외, 특수효과, 외주미술비, 소품비, 조명,
자막료, 중계조명 임차 등

⑧ **의상/헤어/코디/분장비** : 제작업무 중 의상, 헤어, 코디, 분장과 관
련한 비용

예시) 분장용품/분장료, 코디, 의상, 미용 등

⑨ **제작진행비** : 제작 관련 진행성 경비로서, 회의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조사연구비, 취재비 등 관련 비용(교통비, 유류비, 소품비
등 미포함)

※ 여비/교통비, 차량주유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별도 계정과목)

예시) 기자실사용료, 취재지원비, 취재보조비, 진행비, 외주관리진행비, 자체
제작진행비, 편집진행비, 연출제작진행비, 여론조사비 등

⑩ **외주용역비** : 제작업무 중 외부 인력(파견 포함)에 대한 인건비 등을
포괄적으로 일괄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

예시) 파견업무대행, 외주용역비, 제작용역사원, 제작외주용역비, 제작용역비 등

⑪ **여비/교통비** : 제작 관련 국내외 출장비(일비, 식비, 숙박비 등) 및
교통비 등 비용(사전기획 포함)

예시) 국내출장비, 해외출장비, 조기출근교통비, 사전답사, 항공료, 주차료,
식대, 시내교통비, 숙박비, 해외코디비, 해외통역비 등

⑫ **방송제작차량비** : 방송제작과 관련한 차량 비용[임차료, 차량유지비(수리비, 유류비, 보험료 등) 등 포함]

※ 방송제작과 관련한 차량 : 취재차량, 중계차량, 특수차량, 제작장비 운반차량

※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제외

예시) 제작차량용역비, 차량렌트료, 차량임차료, 중계차임차 등

⑬ **방송제작시설이용료** : 방송제작과 관련한 시설(스튜디오 등) 등 이용비용(관리비, 수도광열비 등 포함)

※ 건물 및 송·중계소 시설 유지비용 등의 수선유지비는 제외

예시) 외부제작시설이용료, 스튜디오임차료, 사무실임차료/관리비 등

- 스튜디오 임차료 : 재임대 면적 부분은 별도로 차감

- 건물 임차료 및 관리비: 일반 사무실 부분은 부서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 처리

- 건물 전기료 : 일반 사무실 부분은 부서별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 처리

⑭ **통신비** : 방송제작 및 송출* 과정에서 이용하는 통신과 관련한 비용(회선사용료 포함)

* 제작 완료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비용은 제외(판매관리비)

예시) 무선인터넷단말기사용료, LTE모뎀사용료, 웹하드사용료, 제작우편료, 제작전용회선료, 제작전화료, 라우터사용료, 중계분담금, 회선사용료, 데이터전용선료, SNG위성사용료, 전용회선료, 방송회선료, 방송회선임대, 중계회선사용료 등

⑮ **기타장비이용료** : 방송제작 관련 장비(영상촬영, 음악/음향효과, 미술효과, 조명 등)가 아닌 기타 장비와 관련한 비용(수선유지비 포함)

예시) 방송시스템유지보수, 방송장비수리, 송출노트북 수리, 방송장비수선비, 방송제작시스템위탁운영비, 방송IT장비수선유지비, 웹시스템위탁운영비, 방송장비수리, 송출VCR임차료, 발전기 등

⑩ 콘텐츠사용료 : 제작 관련 콘텐츠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

예시) 외신영상사용료, 기상정보이용료, 저작권침해합의금, 영상물소재사용료 선금, 음악모니터링시스템분담금, 재방송료/복제료/전송료, 방송보상금, 방송사용료, 음악저작권수수료, 저작권사용료 등

※ 저작권료는 기존 저작권료, 재방영 경험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비용을 추산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⑪ 기타 : 제작관련 비용 중 상기 계정과목으로 분류가 어려운
공통비용(공통 소모품 등) 및 이월 자체제작비

- 당기 이전에 선급금 또는 무형자산(제작방송프로그램) 처리한 프로그램이 당기에 방영된 경우 원가(비용성격에 따른 원가계정에 각각 기입) 처리하여 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 다만, 무형자산 처리 후 재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손상차손) 처리하고 콘텐츠 투자금액에서도 제외

□ 프로그램 구매비용 계정과목 및 세부내용

※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회계처리 및 보고에 관한 지침』 적용

- 결산일 현재 구입이 완료되지 않은 방송프로그램은 구매 완료 시점까지 선급금(방송프로그램선급금) 처리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어 방영되었으나 재방영이 불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방영시점에 매출원가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었으나 방영되지 아니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한 후 방영시점에 재방영 여부를 고려해 매출원가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관련 무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

- 결산일 현재 구매 완료되어 방영된 방송프로그램 중 재방영이 확실한 방송프로그램은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고, 계약조건, 재방영 경험률 등을 고려한 합리적 내용연수동안 상각하여 매출원가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 포함). 다만 무형자산 계상 후 방영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관련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영업외비용)로 처리(콘텐츠 투자금액에서 제외)

□ 콘텐츠 투자금액 불인정 계정과목

항 목	세부내용	비 고
국가지원금 등	방송발전기금 등	재승인 조건은 자체자금 투입을 전제
프로그램 상각	미방영프로그램을 상각하여 비용처리	구매 프로그램은 방영 시 비용화해야 함
시설임대수입	스튜디오 등 임대수입	시설 일시 운용수익 등은 관련 임차 비용에서 차감
과태료	방송광고 법규위반	제작비용이 아닌 행정비용에 해당
송출회선 사용료	유료방송사에 방송프로그램 송출 비용	프로그램 완성품 송출은 제작비용에 미포함
판관비	홈페이지 수수료, 운영대행료 등	판매관리비용은 제작비에 포함하지 않음
인터넷 사용료	사무용과 방송제작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인터넷 전용회선 요금	방송제작이 아닌 경우, 포함하지 않음
세금과공과	세금 및 각종 공과금	방송발전기금, 법인세 및 벌금과 과태료 등 방송제작과 무관한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일체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개정안 시행 전 자산의 감가상각비	본 개정안 시행 이전에 투자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무형자산 상각비는 제외

□ (신설)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 제작원가 분류기준 ('22년부터 적용)

○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의 정의

1) 인건비의 범위

- 급여, 상여, 제수당, 퇴직급여, 사회보험 회사부담분
- 복리후생비* : 임직원의 복리 및 후생에 사용된 비용으로 각 사별 복리후생비 지급규정에 따른 것만 인정

* 복리후생비와 유사한 비용은 아래와 같이 분류

비용의 성격	계정 분류
제작관련 진행성 경비 (회의비, 도서구입, 인쇄비, 조사연구비, 취재비)	제작진행비
출장비(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여비교통비
제작부서 부서운영비(부서회비)	제작진행비 또는 기타
특파원관련 체재비, 항공료 및 제 비용	취재비

2) 제작인력 범위

- 연출료 : 연출, 조연출, 무대연출 → 연출
- 기자인건비 : 취재기자, 촬영기자 → 기자
- 출연료 : 아나운서, 기상캐스터, 성우 등 → 출연자
- 원고료 : 작가, 통번역가 → 작가

○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의 인정기준

-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부 제작인력 인건비로 인정

1) 소속부서가 콘텐츠 제작부서일 것

- 심의부서, 편성부서 및 지원부서는 비제작부서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심의·편성·지원 부서 소속 인력의 업무가 콘텐츠 제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함

2) 해당 인원이 제작인력일 것

- 제작인력의 정의는 위 '1. 내부제작인력의 정의' 참조
- 연출, 기자, 출연자, 작가 이외의 인력 : 비제작인력
- 제작부서라도 비제작인력의 인건비는 제외

3) 해당 비용이 인건비일 것

- 인건비의 정의는 위 '1. 내부제작인력의 정의' 참조

3

공익성 관련 방송프로그램 실적 및 이행계획

1. 공익성 관련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시간)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실적									

※ 2023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세부 내역 >

일시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21.01.01	더불어 삼시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	60	재방 2회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익성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자 방송, 비상업적 공익광고 등

□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 계획(양식)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편성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2.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소수시청자 그룹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편성실적',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시청자 권익실현 관련 이행실적
- 어린이·청소년 보호방안 관련 이행실적
- 장애인 지원방안 관련 이행실적
- 노약자·다문화가정·외국인 등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관련 이행실적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편성실적(양식)

<연도별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실적> (단위 : 분, %)												
연도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시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계획	실적	계	계획	실적	계	계획	실적	계	실적		
어린이· 청소년			-			%			%			
장애인												
다문화가정 ·노약자·외국인												
기타												
계												

※ 2023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소수 시청자 그룹 프로그램 세부 편성 내역 >					
일시	구분	프로그램 명	방송내용	방송시간(분)	비고
	어린이· 청소년				재방 2회

※ 소수시청자 그룹별(어린이·청소년, 장애인 등) 세부 편성내역을 기재
※ 본방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방시 비고란에 횟수 기재

□ 장애인 방송 편성실적(양식)

유형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수화방송	(%)	(%)	%	(%)	(%)	%	(%)	(%)	%	(%)	(%)	
자막방송	(%)	(%)		(%)	(%)		(%)	(%)		(%)	(%)	
화면해설방송	(%)	(%)		(%)	(%)		(%)	(%)		(%)	(%)	
전체방송시간	(%)	(%)		(%)	(%)		(%)	(%)		(%)	(%)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상기 이행실적 관련 사항을 포함한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장애인 방송 편성 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소수 시청자 그룹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계획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어린이·청소년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장애인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다문화가정 ·노약자·외국인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기타	(분 %)	(분 %)	(분 %)	(분 %)	(분 %)	(분 %)
전체방송시간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분 (100%)

□ 장애인 방송 편성계획

분야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자막방송	시간(분)						
	비율(%)						
화면해설 방송	시간(분)						
	비율(%)						
수화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 방송시간	시간(분)						
	비율(%)						

4

방송프로그램의 균형적 편성 실적과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실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및 실적'은 아래 양식 참조
- ※ 장르의 분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75쪽) 참고
- 이 외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운영실적 및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있는 경우 기술

□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및 실적

구 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 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 계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편성 계획과 이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 계획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은 아래 양식 참조
- ※ 장르의 분류는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75쪽) 참고
- 이 외에 장르별 다양성 제고를 위한 기구(또는 회의) 설치·운영계획 및 기타 균형적 편성을 위한 계획이 있는 경우 기술

□ 향후 5년간 방송프로그램 주요 장르 편성 계획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소 계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교육·문화·예술						
드라마						
버라이어티쇼						
음악쇼						
퀴즈·게임쇼						
코미디						
영화						
스포츠						
애니메이션						
합 계						

※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

< 참고 - 방송프로그램 장르 분류기준 >

장르	정의
뉴스	○ 국내외 사건, 사고, 쟁점 등과 관련해서 진행자를 중심으로 기자가 취재한 사실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정규 뉴스 및 특별 편성 뉴스포함)
탐사보도	○ 국내외 특정 시사 쟁점에 대해, 심층적인 탐사 취재 사실 및 관련 분석내용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시사논평	○ 국내외 시사 쟁점 관련 보도내용(자사 및 타사)에 대해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프로그램
토론·대담	○ 특정 주제에 관해 진행자가 관련 전문가의 입장을 묻거나 관련 전문가가 찬성 반대 등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 사실에 입각한 촬영과 합리적 재구성을 통해 현실을 기록하는 프로그램
생활정보	○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용지식이나 상식, 시의적절하고 흥미있는 정보와 화제 거리를 안내하거나 소개하는 프로그램
교육문화예술	○ 교육 : 정규교과과정을 다루거나 그에 준하는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 교양 강좌 및 직업 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 : 전통문화예술과 현대문화예술 등을 다루는 프로그램
드라마	○ 서사(narrative)구조를 지니는 허구적 구성물(fiction)
버라이어티쇼	○ 토크 버라이어티 쇼, 연예정보 쇼, 토크 쇼, 연예시상식, 시청자 비디오 모음 등의 오락 쇼 프로그램
음악쇼	○ 대중음악 일반을 다루는 프로그램
퀴즈·게임쇼	○ 지식이나 재치, 실력을 겨루는 프로그램
코미디	○ 개그맨이나 코미디언의 연기 비중이 높거나 프로그램 전체의 목적이 희극적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
영화	○ 극장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된 서사가 있는 허구물
스포츠	○ 모든 종류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스포츠 뉴스(뉴스)와 특정 스포츠의 교습(교육·문화·예술)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제외
애니메이션	○ 실사영화와 다르게 다양한 제작방식을 통해서 구현되는 장르로 셀 애니메이션, 클레이 애니메이션, 페이퍼 애니메이션, 3D 애니메이션 등을 의미

※ 토론·대담 프로그램이란 특정주제에 관해 찬성·반대를 토론하거나 한 인물에 대해 집중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3.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1

경영 전략 및 관리 실적 및 계획

1.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실적, 교육훈련 실적, 주52시간 시행 대비 추진실적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고용현황', '직원 교육투자 현황', '직원 교육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고용 현황(양식)

- 개요

(단위 : 명)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정규직								
계약직								
계								

-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급별 인력 고용 현황(2023.3.31.)

(단위 : 명)

구분	임원	정규직					계약직					합계
						소계					소계	
인원	정원											
	현원											
인건비총액												
인건비평균												

- ※ 각 사업자별 내부 직급체계에 맞게 구분하여 작성하되, 인건비는 근로소득원천 영수증 상의 연간급여총액(재무제표와 다를 수 있음) 기준
- ※ 정원이 없는 경우, 기재하지 말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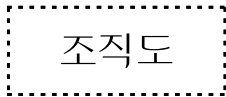
○ 부문별 인력구성 현황(2023.3.31.)

(단위 : 명)

구분	임원	방송직						방송직 외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소계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기타	소계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소계												

※ 임원, 방송직(기자, PD, 아나운서, 방송기술, 기타방송), 관리행정, 연구직, 광고영업홍보, 기타 등으로 구분

※ 내부 조직도(2023.3.31. 기준)



※ 사업자별 내부 조직도를 작성

□ 직원 교육 투자 현황(양식)

(단위 : 백만원)

연도 유형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국내전문교육			%			%			%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 타													
합 계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직원 교육실적 세부내역(양식)

(단위 : 백만원)

기간	교육유형	교육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 교육유형은 「국내전문교육, 국내교양교육, 해외교육, 기타」, 방법은 「위탁, 강사초빙, 견학, 연수」 등으로 구분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교육훈련 계획, 주52시간 시행 대비 추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향후 인력 수급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향후 인력 수급계획(양식)

구분		'23년 말	'24년 말	'25년 말	'26년 말	'27년 말	'28년 말
정규직	신규						
	경력	자체					
		외부					
계약직							
계							

※ 자회사가 있는 경우 필요시 별도 작성

2. 경영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실적 및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관련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경영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추진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전략

가. 향후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기존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관련 이행실적
-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관련 이행실적 등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 계획과 관련한 기본 경영 전략 및 방향
- 향후 5년간 시장전망
- 기업 내·외부 환경 분석
- 신규 플랫폼 진출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 계획
- 국내 콘텐츠 공급 및 유통 관련 계획

4.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 및 향후전략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콘텐츠 유통,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 등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5. 자금조달 및 운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프로그램 제작, 방송시설 설치 등 연도별 자금운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그 산출 근거를 제시
- 자금 조달계획은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자기자본, 타인자본)으로 구분하여 자금운영 계획에 따른 추정 소요자금에 대한 조달계획 및 조달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6. 사업성 분석

- 향후 5년간(‘23~’27년)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등에 근거하여 추정 재무제표(아래 양식 참조)를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추정근거 제시) 사업성을 분석
- 추정 현금흐름 등을 기초로 DCF 방법에 의한 순현재 가치(NPV), 내부 수익률(IRR), 손익분기점을 산출하고, 할인율 등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 명시

□ 추정재무제표(양식)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4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5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6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7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2028년 (전년대비 증감비율)
요약 재무상태 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 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방송프로그램비용						
	기타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기타 판관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 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엑셀 파일 별도 제출

2

재무적 안정성과 수익성('20~'23. 1분기)

1. 재무구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부채총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방송사업매출액								
	기타사업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총이익								
	판매비와관리비								
	인건비								
	영업손익								
당기순손익									
재무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매출액영업이익률(%)								
	총자본회전율(%)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별첨으로 제출, 엑셀화일 별도 제출
- 2019, 2020, 2021년, 2022년 감사보고서 각 2부 : 별도 제출
- 전년대비 증감비율은 실적칸에 두 번째 줄로 ()에 작성
- 방송사업자 재산상황공표자료 작성기준을 근거로 최근 3년간(2020, 2021, 2022년)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재무비율 작성

2. 수입현황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행사 매출액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 매출액			%			%			%				
총 계			%			%			%				

※ 수입금액의 총합은 재무제표상의 매출액 금액과 동일해야 함.

※ 수입현황 구분 기준은 방송사업자 회계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함

나. 방송 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 상기 항목별 세부 매출액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계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전년 대비 증감 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			%			%				
			%			%			%				
			%			%			%				
합 계			%			%			%				

※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예)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은 플랫폼 사업자별로 구분하고, 방송프로그램 판매는 국내·외 등으로 구분

3. 추정수입

가. 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프로그램 제공 매출액		%		%		%	
광고 매출액		%		%		%	
협찬 매출액		%		%		%	
방송 프로그램 판매 매출액		%		%		%	
방송시설 임대 매출액		%		%		%	
행사 매출액		%		%		%	
기타방송 사업매출액		%		%		%	
기타사업매출액		%		%		%	
총 계		%		%		%	

나. 방송프로그램 제공, 광고, 협찬, 방송 프로그램 판매, 방송시설 임대, 행사, 기타 방송사업, 기타 사업 매출액

o 상기 항목별 세부 예상수입 내역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단위 : 백만원)

구분 \ 연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		%		

구분 \ 연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		%		%	
		%		%		%	
		%		%		%	
		%		%		%	
		%		%		%	
		%		%		%	
총 계							

3

방송기술 등 관련 투자 실적 및 계획

1. 방송시설설치 운영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실적', '국산장비 도입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세부 내역은 부속서류로 제출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국산 방송장비 도입실적(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 방송제작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계획', '국산장비 도입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연도별 방송시설 투자 계획(아래)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국산장비 도입 계획(양식)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제작 시설							
송출 시설							
기타 시설							
계							

2.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관련 이행실적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실현 관련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제작,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 계획
-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계획 등

**4.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법령 등 준수 여부**

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과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

1.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및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이행실적
 - ‘상생협약체 운영’,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에 관한 실적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이행 실적
-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R&D) 계획의 이행실적
-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이행실적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계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전년대비 증감비율	금액		금액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연구개발 총투자			%			%			%				

※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연구개발 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연구분야	연구내용	방법	지원액 (전년대비 증감)
				(%)
				(%)
				(%)
				(%)
합 계				(%)

나. 향후 5년간 계획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외주상생 등 방송산업발전 기여 계획
-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및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 노력 관련 계획
 - '상생협약체 운영', '표준제작비 산정기준'에 관한 계획 등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관련 이행 계획
- 방송장비 산업기여 및 연구개발(R&D) 계획
- 방송인력 양성계획

2.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나. 향후 5년간 계획

- 향후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3. 콘텐츠 산업 육성·기여 계획의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가. 재승인 당시 사업계획 및 이행실적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투자 이행실적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 환원 이행실적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

- 콘텐츠 산업 육성 관련 향후 계획
-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 환원 관련 향후 계획

2

방송법 등 관계법령 위반 현황

- ※ '23.4.30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 방송법 위반 현황은 심의제재,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의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을 적시할 것

□ **방송법 위반 현황(2020.9.1. ~ 2023.4.30.)**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 방송채널사용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방송법 위반사례
- ※ (예시) 법인의 방송법 위반 사례, 소속 임·직원이 방송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방송법 외 타법 위반 현황(2020.9.1.~2023.4.30.)

- ※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법률 위반사례
- ※ (예시) 법인 및 소속 임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전파법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 심의제재 현황(2020.9.1. ~ 2023.4.30.)

프로그램명	제재 조치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주의, 경고 등		방송심의에관한규정 제0조제0항		

- ※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심의제재 현황을 양식대로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재심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심”, “소송”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 시정명령 및 심의제재 이외 기타 행정처분 현황(2020.9.1. ~ 2023.4.30.)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비고
과태료					
과징금					

-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 심의제재 이외 행정처분명(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3

시정명령 건수, 시정명령 이행여부 현황

※ '23.4.30일 기준으로 작성 후 필요시 재승인 심사위원회 개최까지 보완

□ 시정명령(불이행) 등 현황(2020.9.1.~2023.4.30.)

행정처분명	처분일자 (위반일자)	위반법령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사유	비고
시정명령				불이행	재승인조건 위반	소송 (00.00.00)
업무정지 등					시정명령 불이행	소송 (00.00.00)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시정명령(불이행), 처분·위반일자('yy.mm.dd), 위반 법령(조, 항), 위반내용, 시정조치 내용 등을 작성

※ 비고란에는 불복하여 소송 등을 제기한 경우 “소송” 등을 기입하고 최종 결과가 확정된 날짜와 결과 내용을 기입할 것

4 [재]승인시 부과된 조건,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

- 사업자별로 <붙임-참고> 항목별로 이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 자료작성은 요약, 본문, 별첨 자료로 구성·작성 (필요시 요약·본문·별첨을 묶어서 부속서류로 별도 제출)

1. 재승인 조건

가. 요약

재승인 조건(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재승인 조건 내용 및 이행실적)

< 재승인 조건 >

<이행실적>

다. 별첨(증빙자료 등)

2. 권고사항

가. 요약

권고사항(요약)	주요 이행실적(요약)

나. 본문

< 권고사항 >

< 이행실적 >

다. 별첨(증빙자료 등)

<붙임-참고>

□ 종편PP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MBN)

< MBN : (주)매일방송 >

구 분	내 용
재승인 조건	<p>1. 사업계획서 및 2020.11.24.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추가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p> <p>※ 사업계획서와 추가개선계획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추가개선계획이 우선함</p> <p>2.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제고를 위해 사업계획서(방송콘텐츠 품격제고, 시사·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다양성 강화, 선거방송 공정성·객관성 확보, 방송편성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p> <p>3. 경영투명성 확보 및 외주상생 등을 위해 추가개선계획(공정성 강화방안, 투명성 개선계획, 상생강화방안)에서 제시한 계획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p> <p>4.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3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 제21조 제3항, 제25조, 제27조 제1호, 제2호 및 제5호, 제51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할 것. 또한, 전국적 동시선거인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내지 제20조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할 것</p> <p>※ '20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정제재 건수를 대상으로 하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3항, 제25조 및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의 위반으로 인한 법정제재의 경우, '20년은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p> <p>- 다만, 개별 제재조치의 위반근거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등 복수인 경우에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위반 건수에만 포함함</p>

구 분	내 용
	<p>5. 방송 관련 학회 등 복수의 전문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2021년부터 시사·보도프로그램 등의 공적책임·공정성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할 것. 또한, 방송사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것</p> <p>6. 협찬을 받은 프로그램에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직접적인 효과나 효능을 다루는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알 수 있도록 협찬 받은 사실을 반드시 고지하되, 해당 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 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3회 이상 고지할 것. 다만, 고지 시 특정 브랜드나 회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상품명이나 용역의 명칭, 제공업체 등을 노출하여 광고효과를 주지 말 것</p> <p>- 또한, 관련 프로그램이 방송된 이후 7일 이내에 프로그램명과 협찬 받은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등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전월의 이행 실적 자료를 매월 15일까지 제출할 것</p> <p>7. 방송프로그램의 품질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콘텐츠 투자금액 산정을 위한 세부기준과 양식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제출하고, 회계법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할 것. 다만, '20년 콘텐츠 투자계획은 '20년 재승인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20년 연간 투자계획금액을 준수할 것</p> <p>8. 외주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저작권과 수익배분 등에 관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배포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직전 반기 동안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p> <p>9.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다양성 및 편성의 균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편성위원회 논의를 통해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0. 업무정지 행정처분으로 (주)매일방송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경제적 책임을 지는 방안과 동 처분과 관련된 대표이사 및 임직원 당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구 분	내 용
	<p>11.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가 방송사 운영 및 내부 인사업무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경영혁신방안을 종사자 대표의 의견 및 외부기관의 경영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 경영혁신방안에는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대표이사·사내이사 등 임원선임절차 개선, 경영·회계 관련 내부통제 및 관리시스템 정비 방안 등을 포함할 것</p> <p>12. 시청자위원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포함하여 주주의 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로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3. 대표이사는 방송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되 정관 제36조 제2항에 따른 공모 제도를 시행하여 선임할 것. 또한, 종사자 대표를 공모 심사위원에 포함하고 대표이사의 독립적인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것.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방안을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4.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시 부가된 권고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는 제작협력업체 보호 및 고용안정 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이행실적을 업무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매 1개월마다 제출할 것</p> <p>15. 2020년도 소각한 자기주식 금액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재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마련할 것. 협의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관련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이행실적은 관련 방안을 이행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p> <p>16.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대주주(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자 포함)와의 자금대여, 담보제공 등 내부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되,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경우 종사자 대표가 포함된 전담기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할 것. 이사회에 보고한 실적을 매년 3월 31일 및 9월 30일까지 각각 연 2회 제출할 것</p> <p>17. 최대주주의 대표자는 방송법 제8조, 제18조 등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재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할 것</p>

구 분	내 용
권고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편성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보도·제작·편성 분야 간부 임명 시 종사자의견반영 제도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할 것 2.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드라마 등 방송프로그램의 편성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방송프로그램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도별 균형 있는 제작과 편성을 하도록 노력할 것 3. 어린이·청소년의 노동권, 사생활 보호 등의 권리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어린이·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표준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규정을 정비하고 이를 적극 이행할 것 4.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5. 소유·경영의 분리를 통한 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방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름)가 방송사의 사내이사(대표이사 포함)를 하지 않도록 할 것. 또한 최대주주사에서 방송사로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도록 노력할 것. 아울러 재승인 후 6개월 이내에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것

5.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1

재난방송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가. 재난방송실적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편성 실적,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운영 기본 방향
- 재난방송 편성실적
-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 재난방송 시스템 및 조직·인력 운영실적
- 재난방송 교육실적
- 재난방송 모의훈련 실적
- 재난방송 매뉴얼 관리 현황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실적

□ 재난방송 편성 실적(양식)

< 재난방송 편성 현황 >												
구분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방송시간 (분))		비고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방송시간 (분)		전년대비 증감비율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재난방송	(%)	(%)	%	(%)	(%)	%	(%)	(%)	%	(%)	(%)	
전체방송 시간	(%)	(%)		(%)	(%)		(%)	(%)		(%)	(%)	

※ 2023년 재난방송 편성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하고, 계획이 없었던 경우 실적만 작성

< 재난방송 세부 편성 실적 >				
프로그램명	방송내용	방송일시	방송시간(분)	비고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양식)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적 총괄표 >

(단위 : 건, %)

구 분	①통보건수	②실시건수	③미실시건수	실시율(%) (②/①*100)	비고
2020년 12월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합계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 실시 현황 >

통보문 제목	통보시각	방송시작시간	특보 (속보 포함)	자막 (스크 롤포함)	spot (캠페 인등)	프로 그램 내영	방송 형태	상세입력사항 (시스템내기타처리시)	비고
지진속 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1	-	-	-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조 기경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속보	뉴스속보 반영함	분이내
지진통 보	0000-00-00 00:00:00	0000-00-00 00:00:00					특보	9시뉴스 지진특보 반영	분이내

※ 2023년도 실적은 3.31일 기준으로 작성

※ 실적은 법령에 따른 재난방송 실시 의무대상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재난방송온라인 시스템 상 통보된 전체 건수 등은 총괄표의 비고란에 작성

나. 향후 5년간 계획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재난방송 편성계획 작성 시 아래 양식 참조

- 재난방송 운영 기본방향
- 재난 예방방송 편성계획
 - 재난별 국민 행동요령, 재난예방 캠페인 등
- 재난방송 신속성·정확성 등 충실성 강화 계획

재난 예방방송 편성계획(양식)

(단위 : 분, %)

분야	2023년 4분기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재난 예방방송 시간(분) (비율)						
전체방송시간(분)						

2

시청자 의견청취 관련 공표 자료

□ 시청자 의견 청취용 요약문(양식)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신청인에 관한 사항	- 대표자 편성책임자 등 명시
제2장.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제3장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제4장. 경영·재정·기술적 능력	
제5장.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의 이행 및 방송 법령 등 준수 여부	

※ 시청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자료 등을 적극 활용하여 3페이지 이내로 작성

특수관계자 확인서

방송통신위원회 귀중

이 확인서는 주식회사0000가 2023년 11월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데 따른 재승인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8조(소유제한등)의 준수 확인을 위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인(법인)은 주식회사0000 주주(첨부1) 가운데 본인과 「방송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제2호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아래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본인(법인)과의 특수관계자 여부
			주식수 (주)	지분율 (%)	
본 법인명					본 법인
총 계					

또한, 본인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4월 30일 기간 동안 주식회사0000 주주(첨부1) 중 본인(법인)과 채무보증 관계에 있던 자의 명단이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단위 : 백만원)

연월일(보증기간)	보증인	피보증인	보증내용	보증금액	비 고

2023년 00월 일

주 주 명 :

대표자명 : (인)

첨부 : 1. 주주현황(2023.4.30 기준) 1부
2. 인감증명서 1부

< 참고 > : 특수관계자 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

□ 「방송법 시행령(“22.8.16 시행)」

제3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4. 9. 17., 2006. 3. 10., 2010. 1. 26., 2016. 5. 27.,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원

다.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2.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 및 그 임원

라.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 내지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및 그 임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2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동항 제2호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 중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본인이 법인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개인의 의사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는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6. 3. 10., 2008. 2. 29., 2016. 5. 27.>

1. 개인인 경우

본인의 사용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거나 사용자인 자

2. 법인인 경우

본인과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이사·감사·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4. 9. 17., 2006. 3. 10., 2008. 2. 29., 2013. 3. 23., 2017. 7. 26.>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당해 법인과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당해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당해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협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⑤ 삭제 <2016. 5. 27.>

□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58호, '22.7.12 개정시행)

제2조(특수관계자의 범위 예외) 영 제3조제2항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2.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제1호에 따른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대표자
4.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단독으로 또는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본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개인
5.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및 그 대표자
6. 영 제3조제1항제2호라목의 관계에 있는 자 중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계열회사의 대표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첨부1)

주주현황

(2023.4.30 기준)

구성주주의 법인명(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출자비중	
			주식수(주)	지분율(%)
총계				100%

(첨부2) 인감증명서 1부

4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2020.9.1.~2023.4.30.)

1. 대표자 변경 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재

2. 편성책임자 변경현황

성명	재 직 기 간	주요약력	비고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이전 재승인 부터 2023년 4월말까지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변경 현황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위원회 신고일자를 기재

3.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성명 (직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자성명 및 관계	비고
성명 (대표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성명 (편성책임자)		등록기준지			
		현주소			

※ 재승인 신청서 제출일 현재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를 제출

4. 편성책임자 공표 현황

편성책임자	공표방법	공표일시	횟수(회)

5

협찬 운영 현황('20.10.1.~'23.3.31.)

1. 협찬 운영 방향

2. 협찬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4분기	2021년	2022년	2023년 1분기
프로그램 제작 협찬	(%)	(%)	(%)	
캠페인 협찬	(%)	(%)	(%)	
행사 협찬	(%)	(%)	(%)	
시상품 협찬	(%)	(%)	(%)	
기타 협찬	(%)	(%)	(%)	
협찬수입 총계	(%)	(%)	(%)	
전체매출액				

1. 개요

2. 주요 내용

7

관계회사 현황

□ 관계회사 현황(2023.4.30. 기준)

(단위 : 천원)

법인명	관계 ¹⁾	주요사업	지분율 (%)	콘텐츠 등 거래금액			비고
				2020년	2021년	2022년	

1) 신청 법인 기준으로 지배회사는 '지배', 종속회사는 '종속', 동일 지배하의 다른 종속회사는 '계열'로 표기

8

특수관계자 방송사 및 다른 방송사업자 지분 소유 현황

1. 특수관계자 방송사 현황(2023.4.30기준)

특수관계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국(채널명)	유형	특수관계내용	관련 법령
		PP	계열회사	방송법시행령 3조1항0목0호
			30% 출자	
			30% 출자	
			계열회사	
			계열회사	

2. 다른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현황(2023.4.30. 기준)

지분 소유 방송사업자명	승인·승인 또는 등록된 방송사업자명(채널명)	유형	출자금액 (단위:천원)	지분율 (%)
		지상파		

9

각종 수상 실적(‘20.12.1~’23.3.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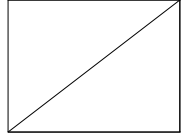
순번	수상년월일	수상자(소속)	프로그램명	수상제목	수여기관	수상내용	비고

V. 승인장 사본

VI. 주간기본편성표

- 재승인 대상이 되는 방송채널의 주간기본편성표 제출
- 2023년 4월 30일 기준, A4 용지 규격

재승인신청서 ②



부속서류

원본

2023. 00.

로고 (주)○○방송

원본임이 틀림없음

법 인 명 :

대표자명 : (인)

목 차

1. 법인등기부 등본	0
2. 편성규약 전문	0
3. 자체심의 실적	0
4. 자체심의 규정	0
5. 재무상태표	0
6. 손익계산서	0
7. 기타	0

별도 제출 자료

1.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감사보고서 2부
2. 재무제표 및 추정재무제표 엑셀파일
 -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세부내역 포함
3. 재무제표 관련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엑셀파일
4. 주주현황 및 주주변동내역 엑셀파일
5.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